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4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 22(수)

발 의 자 : 이범연의원

찬 성 자 : 박찬원, 함명섭,
박종욱, 장문혁,
임영순 의원

1. 주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『2018년도 예산안』, 『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』, 『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』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『2018년도 예산안』, 『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』, 『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』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
- 2018년도 예산안
-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3. 활동기간

-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박찬원의원, 함명섭의원, 박종욱의원, 장문혁의원, 이범연의원,
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 수	부 의 안 건	비 고
12. 7 (목)	제1차 예결특위	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. 2018년도 예산안 ○ 개요설명(기획감사실장) ○ 검토보고(전문위원) ○ 계속비사업(기획감사실장) ○ 세입예산안(재무과장)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의회사무과, 기획감사실, 읍·면	
12. 8 (금)	제2차 예결특위	1. 2018년도 예산안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문화관광과, 자치행정과, 재무과	
12. 9 (토)	휴회	○ 공휴일	
12.10 (일)	휴회	○ 공휴일	
12.11 (월)	제3차 예결특위	1. 2018년도 예산안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주민생활지원과, 종합민원과, 경제체육과	
12.12 (화)	제4차 예결특위	1. 2018년도 예산안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환경위생과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도시주택과	

일시	차 수	부 의 안 건	비 고
12.13 (수)	제5차 예결특위	1. 2018년도 예산안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올림픽추진단, 올림픽운영과,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, 진료지원과	
12.14 (목)	제6차 예결특위	1. 2018년도 예산안 ○ 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 - 농축산과, 기술지원과, 상하수도사업소, 특별회계	
12.15 (금)	제7차 예결특위	1.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개요설명, 검토보고, 소관별 심사	
12.16 (토)	휴회	○ 공휴일	
12.17 (일)	휴회	○ 공휴일	
12.18 (월)	제8차 예결특위	1.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계수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 2.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○ 계수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 3. 2018년도 예산안 ○ 계수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	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